

# 건설업 화재·폭발사고 예방을 위한

핸드북



고용노동부

산업재해예방

안전보건공단





# 건설업 화재·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핸드북

## 목차

### 01. 화재·폭발의 이해

01

1. 화재·폭발 발생 메커니즘 및 사고발생 형태
2. 화재위험작업 시 고려사항

### 02. 화재·폭발 재해 현황 및 사고 사례

03

1. 화재·폭발 재해 발생현황
2. 화재·폭발 대형사고 사례
3. 기인물질별 화재·폭발사고 사례

### 03. 용접·용단 작업 화재·폭발사고 위험관리

07

1. 용접·용단 불티에 따른 화재·폭발 발생 메커니즘
2. 훈소 화재사례 및 발생 시간
3. 취급 시 안전관리 수칙

### 04. 우레탄폼 작업 화재사고 예방대책

13

1. 우레탄폼 반응 메커니즘 및 발화 시의 특징
2. 우레탄폼 화재에 대한 대책

### 05. 핵심 실천사항 및 관련 법규

17

1. 핵심 실천사항
2. 건설현장 화재·폭발 관련 주요 법규

# 1



## 화재·폭발의 이해

1. 화재·폭발 발생 메커니즘 및 사고발생 형태
2. 화재위험작업 시 고려사항

## 화재·폭발 발생 메커니즘 및 사고발생 형태

### ◦ 화재·폭발 발생 메커니즘

- ▶ 가연물이 혼합된 공기가 점화원과 접촉하는 순간 화재·폭발 발생



### ◦ 기인물질별 주요 사고발생 형태

#### 인화성 물질

- 인화성 가스 및 인화성 액체의 증기 등이 체류할 수 있는 용기·배관 또는 밀폐공간 인근에서 용접·용단작업 실시 중 불티가 유증기 등에 착화

#### 우레탄 단열재

- 샌드위치 패널 또는 우레탄 등 단열재 내로 용접·용단 불꽃이 튀어 축열되어 발화
- 스프레이 뿐칠 발포우레탄 인근에서 용접·용단 중 불꽃이 튀어 우레탄에 축열되어 발화

#### 기타 발화재

- 용접·용단 불꽃이 비산하여 가연물(자재, 유류가 묻은 작업복 등)에 착화
- 밀폐공간 환기용으로 공기 대신 산소를 사용하여 산소에 발화

## 화재위험작업 시 고려사항

-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✓ 밀폐된 지역에서의 수행여부        | ✓ 인화성 물질 발생 여부     |
| ✓ 화재위험작업 대상 설비 및 배관의 상태 | ✓ 출입제한 구역 설정 여부    |
| ✓ 작업구역 인근설비의 가동 여부      | ✓ 소화 장비 비치 및 사용방법  |
| ✓ 작업구역 주변의 가연성 물질 보존 상태 | ✓ 작업 중 화재감시자 배치 여부 |

# 2



## 화재·폭발 재해 현황 및 사고 사례

1. 화재·폭발 재해 발생현황
2. 화재·폭발 대형사고 사례
3. 기인물질별 화재·폭발사고 사례

## 화재·폭발 재해 발생현황



### 최근 5년간 화재·폭발로 인한 재해현황

(단위:명)

구분	계	2015년	2016년	2017년	2018년	2019년
계	699	148	170	108	162	111
사망자	64	11	15	14	13	11
부상자	635	137	155	94	149	100

### 재해발생 기인물(착화물) 및 공사종류별 중대재해 현황

재해발생 기인물(착화물)	건수	비율(%)	공사종류별	개소 수	비율(%)
계	64	100.0	계	64	100.0
인화성가스	21	32.8	주거 상업겸용	16	25.0
우레탄 단열재	13	20.3	공장창고	12	18.8
인화성 물질	드럼·용기 관련	9	아파트	8	12.5
	부주의	6	토목기타	8	12.5
전기스파크	6	9.4	단독다세대	6	9.4
원인불상	5	7.8	철도	4	6.3
기타 발화재	4	6.3	기타	10	15.6

- 최근 5년 동안 건설공사 화재·폭발 중대재해 분석 결과, 착화물은 인화성가스(32.8%), 우레탄 판넬류(20.3%), 재해발생 공사종류는 주거 상업 겸용(25.0%), 공장창고(18.8%) 순으로 나타남
- 단위 공종별로는 용접·용접작업(28.1%), 절단작업(15.6%) 순으로 나타남

## 🔥 화재·폭발 대형사고 사례



▲ 부산 냉동창고 신축공사 화재  
('98.10.29. 사망27, 부상16)



▲ 이천 물류 냉동창고 신축공사 화재  
('08.1.7. 사망40, 부상10)



▲ 서울 종로 미술관 신축공사 화재  
('12.8.13. 사망4, 부상9)



▲ 폐수 환경설비 구축공사 중 폭발  
('15.7.3. 사망6, 부상1)



▲ 복선전철 교량 하부보강 중 LPG 폭발  
('16.6.1. 사망4, 부상10)



▲ 상가매장 복구공사 중 화재  
('17.2.4. 사망4, 부상47)



▲ 세종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화재  
('18.6.26. 사망3, 부상 37)



▲ 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 중 화재  
('20.4.29. 사망38, 부상10)

## 기인물질별 화재·폭발사고 사례

### ◦ 우레탄폼 단열재 착화 사례



▲ CO<sub>2</sub> 용접 중 우레탄 단열재 화재로 11명 사상  
('19.03.27. 경기 용인)

▲ 용접 중 단열재(우레탄폼) 화재로 3명 사망  
('18.03.30. 인천 부평)

### ◦ 유증기 착화 사례



▲ 에탄을 누출 인근에서  
용접 중 폭발로 2명 사상

▲ 메탄가스 누출 인근에서  
용접 중 폭발로 6명 사상

▲ 산소절단기 용단 작업 중 유류탱크 폭발로 1명 사망  
('17.06.13. 서울 관악)



▲ 원유배관 설치 시 배관청소 작업 중 폭발로 6명 사상  
('16.10.14. 울산 울주)

▲ 용단 작업 중 LP가스 폭발로 14명 사상  
('16.06.01. 경기 남양주)

### ◦ 기타 발화재 착화 사례



▲ 갱폼 수평부재 용단 작업 중 단열재 화재로 3명 사상  
('19.02.27. 충남 금산)

▲ 절연파괴로 발생한 불꽃이 단열재 등 착화로 37명 사상  
('18.06.26. 세종)

# 3



## 용접·용단 작업 화재·폭발사고 위험관리

1. 용접·용단 불티에 따른 화재·폭발 발생 메커니즘
2. 훈소 화재사례 및 발생 시간
3. 취급 시 안전관리 수칙

## 용접·용단 불티에 따른 화재·폭발 발생 메커니즘

### ◦ 불티 특성

- ▶ 용접·용단 작업 시 다양한 불티가 발생하여 비산
- ▶ 용접 작업 현장 조건(풍속, 풍향, 높이 등)에 따라 비산거리가 늘어남
- ▶ 용접·용단 불티는 약 1,600°C ~ 3,000°C 정도의 고온체
- ▶ 발화원이 될 수 있는 비산 불티의 크기는 최소 직경 0.3~3mm 정도
- ▶ 가스 용접 시 산소 압력, 절단 속도 및 절단 방향에 따라 비산 불티의 양과 크기가 달라짐
- ▶ 비산된 후 상당 시간 경과 후에도 축열에 의하여 화재를 일으킬 수 있음

### ◦ 화재발생 메커니즘

용단 작업 시 가연물에 비산된 불티에 따른 축열 등으로 훈소에서 화재로 발생 과정



용단 작업 시작



용단 불티 가연물(단열재 등)에 비산



5분 경과

가연물에서 연기 발생(훈소 진행)



7분 경과

유염연소로 전환 ⇌ 화재 발생

## ◦ 화재 발생 메커니즘

- ▶ 용접·용단 불티가 단열재 내부에 들어가면, 일정 부분 훈소의 형태(연기 발생)로 진행되다가 충분한 산소의 공급과 측열 등으로 온도가 상승되는 경우 불꽃(화염)을 일으키는 화재·폭발로 확산
- ※ 훈소 : 화재가 발생하기에는 온도가 낮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황 때문에 화염 없이 기연물의 표면에서 열이 발생하면서 서서히 연소되는 현상

## 훈소 화재사례 및 발생 시간



사례	사고 요약	작업 상황에 따른 화재 발생 시간(추정)
1	○○터미널공사 중 가스배관 가용접 작업 중 용접불티로 화재 발생	5분
2	○○중학교 증축공사에서 고정 철물 용접 작업 중 용접불티로 화재 발생	작업과 동시
3	○○제재소 동력실 기계 철거를 위해 용단 작업 완료하고 철수 후 화재 발생	3시간
4	○○생산공장 집진기 추가 설치공사에 따라 용접 작업 완료하고, 철수 후 집진기 및 덕트 연결된 작업장 화재 발생 (용접불티가 집진기 내부로 비산 되어 훈소 진행됨)	7시간

※ 출처 : 중대재해 보고서(안전보건공단), 용접·화기 작업 위험관리 가이드(한국화재보험 협회)

- ▶ 용접·용단 작업에 의한 화재는 단시간 내에 발생할 수도 있고, 때로는 장시간 경과 후에도 발생할 가능성 있음
- ▶ 단열재 등 가연성 물질에 불티가 비산 될 경우 복합적인 요인(불티 낙하지점, 가연물의 연소특성, 공기흐름 등)에 따라, 즉시 화재 또는 훈소 등에 의한 장시간(2~7시간 이상) 경과 후 발화되는 특성이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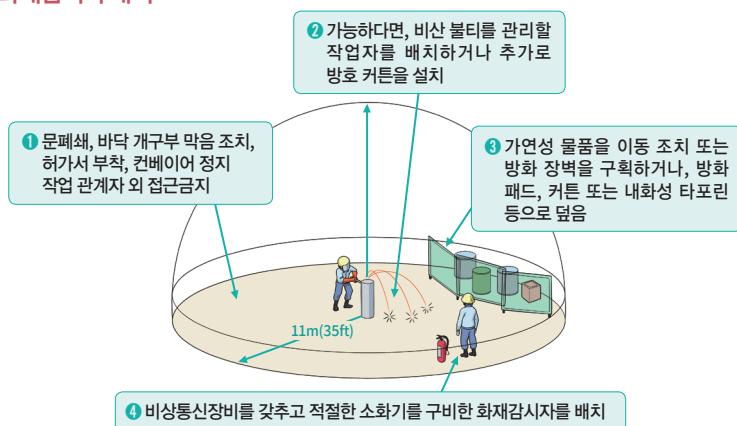


## 취급 시 안전관리 수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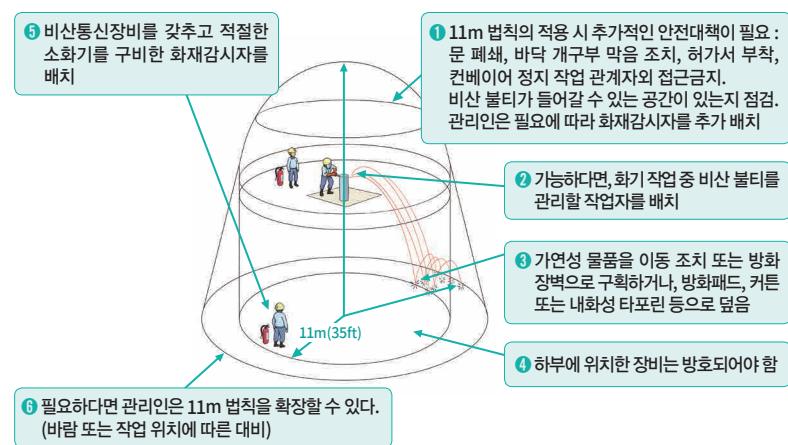


- ▶ 화기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안전 작업을 위해 화재감시자를 배치
- ▶ 작업 중 뿐만 아니라 작업 후 일정 시간 비산 불티·훈소 징후 등 감시활동※ 화재감시자는 작업 완료 후에도 1시간 이상 훈소 발생 징후가 있는지 작업 장소 및 인접한 위·아래층까지 주의 깊게 관찰(감시)
- ▶ 소속 근로자의 화재 등 비상 대응 준비 및 훈련 실시

### 화재감시자 배치



### 2층에서 두명 이상 작업 시 화재감시자 배치



## ◦ 가연물 관리

### ▶ 작업시작 전 가연물의 제거·퍼지·차단 확인

- » 제거작업 전 가연물의 물질특성 파악 후 시작
- » 작업장 주변 가연물 제거, 용기나 배관 내용물 배출 표식 등 안전조치사항 확인
- » 용접불꽃 비산방지를 위한 각종 개구부 차단 여부 확인

### ▶ 가스 분진 누출 여부 측정

- » 독성, 가연성 가스 퍼지 후 가스잔류 여부 확인
- » 용단 전 냉각 후 테스트 훌을 통하여 가스감지
- » 비중, 환기상태, 누출원 등을 고려하여 실시



### ▶ 내용물 제거 시 안전대책

- » 가연성 가스·분진제거 후 공기로 치환
- » 진존률 이송 시 철재호스 사용 및 접지
- » Non-spark 재질의 방폭 공구 사용

## ◦ 점화원 관리

### ▶ 가연성 물질, 인화성 물질 근처에 화기작업 금지

- » 스치로풀 등 가연물 주변, 인화성 물질 취급설비(용기, 배관 등) 근처 및 인화성 물질 취급 밀폐공간에서 화기작업(용접·용단 등) 금지

### ▶ 안전점검 및 화기작업 허가 철저

- » 작업 전 안전점검 및 화기작업허가 철저
- » 작업허가서에 명시된 안전보건조치사항 확인
- » 작업내용 변동에 따른 추가위험 대응 조치

#### 화기작업 중 확인사항



- 주변 작업조건의 변동 및 위험물질 유입 여부
- 작업 중 지속적인 인화성 가스 측정
- 작업 관계자 외 인원의 출입통제
- 불꽃으로 인한 주변의 화재 가능성 방지조치

### ▶ 중점관리 철저

- » 산소와 점화원은 제거가 불가능하므로 가연물에 대한 집중관리(격리, 제거, 방호)가 중요

## 관리 감독 및 점검 활동

- ▶ 인화성 물질 또는 가스 잔류 배관·용기에 직접 또는 인근에서 용접·용단 시 위험 물질 사전 제거 조치
- ▶ 용기 및 배관에 인화성 가스, 액체 체류 또는 누출 여부 상시 점검 후 위험요인 제거
- ▶ 전기케이블은 절연 조치하고 피복 손상부는 교체, 단자부 이완 등에 의해 발열되지 않도록 조임
- ▶ 작업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기계기구는 누전 차단기를 통하여 전원 인출
- ▶ 가스용기의 압력 조정기와 호스 등의 접속부에서 가스 누출 여부를 항상 점검
- ▶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·배치

### 화재감시자 배치 기준

-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(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)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
-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
-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 · 벽 · 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

### 화재감시자의 임무

- 화재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근로자 대피 유도
  -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소화 설비를 갖추고 그 사용법을 숙지하여 초기에 화재 진화 능력 구비
  - 인근의 소화 설비 및 대피로 등의 위치 확인
  - 비상경보 설비를 작동할 수 있도록 상시 유지 및 점검
  - 용접·용단 작업이 끝난 후에도 1시간 이상 화재 가능성 및 발생 여부를 확인
- ※ 사업주는 화재감시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확성기,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

# 4



## 우레탄폼 작업 화재사고 예방대책

1. 우레탄폼 반응 메커니즘 및 발화 시의 특징
2. 우레탄폼 화재에 대한 대책

## 우레탄폼 반응 메커니즘 및 발화 시의 특징

### • 우레탄폼 개요

건축물에 사용되는 우레탄폼의 종류는 단열재 등으로 미리 성형 제조한 우레탄폼 단열판, 벽체 및 지붕재로 사용하기 위해 제조한 복합재질 샌드위치 패널, 현장에서 직접 시공하는 스프레이 우레탄폼 등이 있음



우레탄폼 단열재(우레탄 보드)



우레탄폼 샌드위치 패널



냉동창고 벽면·바닥 스프레이 시공



일반 건축물 천정부 스프레이 시공

● **용도** : 주로 단열재의 용도로 건설현장의 외장재, 조선소 내장재 등 많은 곳에서 사용

● **특성** : 한번 불이 붙으면 폭열을 일으키며 연소,

특히  $1,000^{\circ}\text{C}$  이상 되는 용접불티는 우레탄 속으로 파고 들어가 서서히 연소하고 일정 시간이 경과되어 발화되면 급속히 확산

## ◦ 반응 메커니즘

- ▶ 폴리우레탄 발포체는 성형할 때 고분자의 상태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하나, 통상적으로 반응성이 아주 빠른 두 액상 원료[(diisocyanate : A액)와 (polyol : B액)]를 혼합시켜 기체( $\text{CO}_2$ ) 발생 및 고분자화 반응 진행 시 급격히 점도가 상승하며, 발열반응에 의해 체적 팽창으로 발포체가 형성

## ◦ 발화 시의 특징

- ▶ 우레탄폼은 할로겐 화합물이나 인(Phosphate)을 첨가시킬 경우 난연성을 띠기는 하나 불연성은 아니며, 한번 불이 붙으면 폭염을 일으키면서 연소하는 특성이 있음. 특히  $1,000^{\circ}\text{C}$  이상 되는 용접 불티가 발포 우레탄에 떨어지면 우레탄 속으로 파고 들어가 서서히 연소하고 일정 시간이 경과되어 발화되면 급속히 확산되는 특성이 있음
- ▶ 우레탄폼 발화 초기에는 흰 연기를 내며 분해반응을 일으키다 발포체가 녹아 타면서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급격히 확산되고, 우레탄폼 표면의 피막으로 인해 소화약제 침투가 어려워 일반 화재 보다 화재 진화가 어려움
- ▶ 우레탄폼 연소 시 발생하는 연기에는 염화수소(HCl), 황화수소( $\text{H}_2\text{S}$ ), 이산화질소( $\text{NO}_2$ ), 일산화탄소(CO), 이산화황( $\text{SO}_2$ ), 시인화수소(HCN) 등의 유독가스가 포함되어 있어 근로자들이 유독 가스를 흡입 시 치사 원인으로 작용

## ◦ 우레탄폼 착화로 인한 사고 사례



지수판 용접 중 하부 우레탄 보온판 화재로  
4명 사상



가설전등 스파크로 인한 우레탄폼 화재로  
13명 사상



## 우레탄폼 화재에 대한 대책

### ◦ 화재예방을 위한 근원적 대책

- ▶ 화기 작업은 단시간 및 다른 작업과 동시에 이루어지고, 소규모 업체가 도급을 받아 작업을 하고 있어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, 건축물의 완공 후 하자 보수 시 인화성물질 제거 및 불티비산방지 조치 등을 소홀히 할 경우 화재로 이어짐
- ▶ 그러므로 화재에 적응성이 뛰어나고 시공이 편리한 **난연성 단열재 사용**이 절대적으로 필요함



### ◦ 난연성 단열재 적용 사례

(건설업) ○○시 교육청은 ○○중학교 화재를 계기로 기존의 스티로폼 단열재 (난연 3급) 대신 난연성능이 우수한 준불연 이상 단열재(난연 2급:폴리우레탄, 그라스울)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여 시공 중임

### ▶ 기대효과

» 준불연 이상의 단열재를 사용할 경우 초기 시공비는 스티로폼에 비해 높으나, 유지·보수 작업 시 용접·용단으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을 고려하면 준불연 단열재를 사용하는 것이 화재 발생으로 인한 재산 손실을 막을 수 있음

※ 재산 손실액 : 이천시 냉동창고 화재(71억원), 안성시 냉동창고 화재(1,366억원)

# 5



## 핵심 실천사항 및 관련 법규

1. 핵심 실천사항
2. 건설현장 화재·폭발 관련 주요 법규



## 핵심 실천사항



▲ 환기·가연물 제거



▲ 불티비산방지포 설치



▲ 화재감시자 배치

① 작업 전 충분한 환기를 실시하고 가연물을 제거

② 작업 시 용접불티 비산 방지덮개, 용접방화포 등을 설치

③ 화재감시자 배치

### • 주요 사고 사례



사례 1



사례 2



사례 3

배관라인 용접작업 중 우레탄 폼에 불꽃이 옮겨 붙어 화재 발생

블록 내부 취부·용접작업 준비 중 화재·폭발

지하저수조에서 용접 중 방수제 유기용제 폭발

LPG·산소를 사용하여 천장 에어컨 배관라인 용접작업 중 불꽃이 우레탄 폼에 옮겨 붙어 발화되어 연기 등에 의해 질식 사망

조선소에서 건조 중이던 선박에서 블록내부 취부·용접 작업을 위해 장소로 이동 중 내부에 체류된 에틸렌가스 폭발로 사망

지하저수조 내부 방수제 도포 후 저수조 통행용 스테인리스 사다리를 설치하기 위해 지지용 앵커 볼트를 가용접하던 중 폭발하여 사망

## ◦ 주요 위험포인트



NO	위험포인트
1	가연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용접·용단작업에 따른 화재·폭발 위험
2	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 용접·용단작업 시 가스 누출 여부 미확인에 따른 화재·폭발 위험
3	인화성 액체의 증기애 대한 통풍 및 환기조치 미실시에 따른 화재·폭발 위험



## ◦ 주요 점검사항



항목 1



항목 2



항목 3



## 화기·가연물 제거

- 인화성 액체의 증기, 인화성 가스 등을 제거하기 위한 충분한 환기 실시
- 용접·용단 작업 전 가연성 물질, 인화성·폭발성 위험물 제거·격리

## 불티비산 방지조치

- 용접불티 비산에 따른 화재·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용접불티 비산방지 덮개, 용접방화포 등 비치 및 사용

## 화재감시자 배치

-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 감시자 지정 및 배치

## 건설현장 화재·폭발 관련 주요 법규

### ◦ 산업안전보건법



용접 등 불꽃발생 작업 시 불꽃 비산방지, 환기 및 소화기구 비치 미준수로 화재가 빈발함에 따라 화재예방제도 강화

» 불꽃발생 우려가 있는 화기작업장소에 대해 원청의 안전조치 책임 부과 및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\* 시 사전 특별교육 실시

\* 가연물이 있는 곳에서의 용접·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 작업 등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(시행규칙 제6조 참조)

» 지하층 등 위험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할 때 대피업무를 전담하는 화재감시자 배치

#### 화재감시자의 지정 및 배치장소

- ▶ 작업반경 11m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(개방부분 포함)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
- ▶ 작업반경 11m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m 이상 떨어져 있으나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 우려가 있는 장소
- ▶ 가연성물질이 금속 칸막이·벽·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열전도, 열복사에 의해 발화 우려가 있는 장소

※ 미지정·미배치 :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

### ◦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(관련 조항)

구 분	내 용
제232조	폭발 또는 화재의 예방
제236조	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
제239조	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의 사용 금지
제240조	유류 등이 있는 배관이나 용기의 용접 등
제241조	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
제241조의2	화재감시자
제242조	화기사용 금지
제243조	소화설비
제244조	방화조치
제245조	화기사용 장소의 화재 방지
제246조	소각장



## ◦ 소방기본법

### ▶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기준

품 명	수 량	저장 취급기준
면화류	200kg 이상	
나무껍질 및 대팻밥	400kg 이상	
사류, 벗짚류, 넝마 및 종이부스러기	1,000kg 이상	
가연성고체류	3,000kg 이상	
석탄·목탄류	10,000kg 이상	1. 저장 및 취급장소에는 품명 최대수량 및 화기취급의 금지 표시 설치
가연성액체류	2m <sup>3</sup> 이상	2.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아 저장 할 것 등
목재가공품 및 나무부스러기	10m <sup>3</sup> 이상	※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합성수지류	발포시킨 것 그 밖의 것	20m <sup>3</sup> 이상 3,000kg 이상

## ◦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

(법 제10조의2) 건축·대수선·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 공사 시공자는 공사현장에서 화재·위험 작업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함  
※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


### [화재·위험 작업]

#### 시행령 제15조의5(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) <개정'18.6.26.>

1. 인화성·가연성·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
2. 용접·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(火氣)를 취급하는 작업
3. 전열기구,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
4.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
5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비슷한 작업으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

### [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]

- ① 소화기 : 상기의 1~5에 따른 작업을 하는 현장에 설치
- ② 간이소화장치 : 연면적 3천m<sup>2</sup> 이상 또는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m<sup>2</sup> 이상인 지하층·무창층 및 4층 이상의 층
- ③ 비상경보장치 : 연면적 400m<sup>2</sup> 이상 또는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50m<sup>2</sup> 이상인 지하층·무창층
- ④ 간이피난유도선 : 바닥면적이 150m<sup>2</sup> 이상인 지하층·무창층

(시행령 제24조)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화기취급 작업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 및 감독 등의 공사 중 소방안전관리사항을 소방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·관리하여야 함 <개정'18.6.26.>

※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



**건설업  
화재·폭발사고  
예방을 위한**

**핸드북**

